민 원 회 신 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법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 우리 법원으로 이송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강한 처벌을.실형이 선고되도록 청원합니다.”(법원 접수 2021. 8. 24., 접수번호 157번)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우리 법원 2020고정689(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탄원서 등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제출처: [42635]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종합민원실

감사합니다. 끝.

2021.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